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9
----------	-----

2011년 7월 4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1년 1월 31일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회부일자 : 2011년 2월 8일
- 라. 상정일자 : 제2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11년 6월 3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함
-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로 각각 인하함(안 별표 제4호)
-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함(안 별표 비고 제1호)
-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별표 제3호)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제안배경 및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체계

-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는데, 현행 도로점용료의 징수체계는 「도로법」 제41조에서 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는 별표를 통해 국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과태료 부과에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었음.

■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3호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현수막의 종류에 현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이외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였고,
- 제4호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또한 동 별표 2의 비고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설명 중 제2호에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였음.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9.1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소 재 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그 밖에 「도로법 시행령」은 제74조를 신설하여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다양하게 규정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 5로 통일하였음.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9.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2호	150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맞춰 점용료 산정기준 반영(안 제3조 및 별표)

-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서 별표 2의 현수막 종류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한 것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별표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제3호에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현수막의 범위를 현행의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에서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으로 개정하는 한편,
- 시행령에서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 제4호에서도 이를 반영 ‘자동차관련시설과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그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의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자동차관련시설과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한 조정률(80%)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그 밖에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점용 신청자와 관리청이 인접한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점용료 산정결과가 큰 차이가 있어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는데, 그 산정기준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으면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토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으로 대체(현행 제10조 및 별표 2)

- 「도로법 시행령」은 제74조를 신설하여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다양하게 규정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 5로 통일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련 별표 2를 삭제하려는 것임.
- 그러나 시행령에 의한 부과기준은 삭제되는 현행 조례 별표 2에 비하여 ‘도로점용허가면적 초과 점용’이나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일시 적치’ 등은 그 면적에 관계없이 회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의 서울시 부과기준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음.

[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현황 비교표

번호	위반사항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2010.9.17개정)	현행 조례 별표 2
1	도로점용허가면적 초과 점용	200만원 (회당)	초과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 마다 100,000원씩 추가(상한 300만원)
2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일시 적치	150만원 (회당)	점용면적 1㎡ 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상한 300만원)
3	준공도면 미제출 또는 실제와 다른 도면 제출	200만원 (회당)	300만원
4	주요매설물 관리자 입회 없이 도로굴착공사	200만원 (회당)	300만원
5	굴착공사 후 관리청 확인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회당)	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상한 50만원)
6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회당)	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상한 50만원)

- 이에 정부에서는 본 조례개정안 제출 이후 「도로법 시행령」 별표 5가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불법 점용면적과 상관없이 적발 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민원의 소지가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1.5.30일 별표5를 다음 [표]와 같이 재차 개정·시행하면서 영 제74조에서 별표5 제2호의 나목과 다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는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1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임.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200 (초과면적 1㎡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위 금액 이내)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2호	150 (점용면적 1㎡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위 금액 이내)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검토

-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별표 5]의 나항과 다항은 조례로서 따로 부과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나항은 초과점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고 다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인데 그 상한선이 위법의 정도가 심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낮은 모순이 있으므로 향후 조례로서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위법 인용조문인 “「지방세법」 제41조”는 2011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각각 인용한 “「지방세법」 제41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개정되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년 6월 30일

제안자 : 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각각 인용한 “「지방세법」 제41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개정되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1조”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 중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24조 제5항제11호</u>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생략)</p>	<p>제2조(도로점용허가) ----- ----- ----- <u>제28조제5항제9호</u> ----- ----- -----.</p> <p>1.~2.(현행과 같음)</p>	<p>제2조(도로점용허가)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u>제26조의2제2항</u>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u>별표1</u>의 기준에 의한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 <u>제42조제2항</u> ----- ----- <u>별표</u> ----- -----.</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u>제24조</u>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 ----- <u>제28조</u> ----- ----- -----</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p>	<p>----- ----- ----- ----- -----.</p>	<p>----- ----- ----- ----- -----.</p>
<p>② ~ ⑤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 ----- 「지방세법」 제41조 ----- ----- -----.</p>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 -----.</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p>	<p>② ----- ----- ----- 제71조제3항 ----- ----- .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p>	<p>② ----- ----- ----- 제71조제3항 ----- ----- .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붙이지 아니한다.</p> <p>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p> <p>2. ~ 4.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② (생략)</p> <p>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p>	<p>-----.</p> <p>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p> <p>-----.</p> <p>1. ----- 제24조</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제7조(점용료의 감면)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현행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p>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제11조(준용규정) (생략)</p> <p>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세입 및 징수교부금)(생략)</p> <p>제14조(시행규칙) (생략)</p>	<p>----- -----제73 조-----.</p> <p>〈삭제〉</p> <p>제10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 -----제42조제1항 제2호----- -----.</p> <p>제12조 (현행과 같음)</p> <p>제13조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수료의 징수)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 (현행과 같음)</p> <p>제13조 (현행과 같음)</p>

현 행

별표 1 제3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별표 1 제4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0 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16 을 곱한 금액

별표 1

개 정 안

별표 제3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별표 제4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6 을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16 을 곱한 금액

별표

수 정 안

별표 제3호

(개정안과 같음)

별표 제4호

(개정안과 같음)

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비고</p> <p>1. 토지가격은 <u>인접한 토지</u>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u>인접한 토지</u>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p> <p>2. ~ 3. (생략)</p> <p>4. <u>단위당 점용료</u>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p>	<p>※ 비고</p> <p>1. -----<u>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u>----- ----- -----<u>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u>-----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점용료</u>----- ----- -----.</p>	<p>※ 비고</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5항제11호”를 “제28조제5항제9호”로 한다.

제3조 중 “제26조의2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1”를 “별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56조제2항”을 “제71조제3항”으로,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를 “제24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56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1조제1항(기존 제12조제1항) 중 “제33조제1항제2호”를 “제4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제3호란과 제4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비고 제1호 진단 및 후단 중 “인접한 토지”를 각각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비고 제4호 중 “단위당 점용료”를 “점용료”로 한다.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기타		1년	122,0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기타		122,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

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② (생략)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71조제3항-----
----- 「지방세기
본법」 제80조-----

-----.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

-----.

1. -----

----- 제24
조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
73조-----
-----.

< 삭제 >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준용규정) (생략)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 및 징수교부금)(생략)

제14조(시행규칙) (생략)

별표 1 제3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별표 1 제4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0 를 곱한 금액

제10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 - - 제 4 2 조 제 1 항 제 2 호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과 같음)

별표 제3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와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별표 제4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16 을 곱한 금액

별표 1

※ 비교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 3. (생략)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 비교

1.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4. 점용료-----

-----.